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01호
- 나. 제 출 자 : 윤 영 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 2. 제안이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제5호)
-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 제5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 5. 29. 운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음.
  
-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지원근거 및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음.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현황은 붙임1의 표와 같으며,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20개구에 37개소가 있으며 이중 5개구에서 9억 8,388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시립금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대안학교 원두와  
학업중단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형 대안교실 하마터면,  
체육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금빛나래  
탁구후원회에서 운영하는 금빛나래학교가 있음.

○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  
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 범위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우리구의 재정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1부.  
2. 의견제시 사례 2건.  
3. 관련법령 1부.

# 붙임1

#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  =관리기관임)

연번	자치구	개소수	기관명	시설주	특화프로그램	자치구 지원현황
	20	37				
1	강 동 구	1	미래학교	공립(한산중)	협력적 인성	-
2	구 로 구	4	다다름학교 달꿈학교 지구촌학교 움툼	시립 법인(자가) 구립	4차산업 자기성장 다문화언어특화 한국어교육, 회복	5천만원 - - 신규
3	노 원 구	3	참좋은학교 나우학교 예쁨예술학교	법인(자가) 구립 민간	자기성장프로젝트 진로교육 예술특화	합: 4억4,773만원
4	도 봉 구	2	예하예술학교 치유학교샘	구립 민간	예술특화 예술치료	1억5,730만원 -
5	마 포 구	1	비전학교	구립	PBL, 프로젝트	-
6	영 등 포 구	2	꿈더하기학교 사람사랑나눔학교	구립 민간	예술특화 감각활성화	2억9,885만원 -
7	은 평 구	1	꿈나무학교	시립	직업, 공동체	-
8	강 남 구	2	꿈에학교 다애다문화학교	시립 민간	진로탐색 한국어교육	- -
9	강 서 구	1	예인미용예술학교	민간	미용진로	-
10	관 약 구	2	꿈타래학교 두리하나국제학교	공립 법인(자가)	진로특화 예술, 회복프로그램	- -
11	광 진 구	1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	법인(자가)	예술특화, 회복	-
12	동 대 문 구	3	청량드림학교 동부나우리학교 마음사랑학교	공립 시립 민간	예술특화 공동체 심리치료	-
13	서 대 문 구	2	도시속작은학교 나래대안학교	시립 법인(자가)	여행, 요리 예술특화	-
14	서 초 구	2	한국연예예술학교 하임학교	민간(자가) 법인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부나눔, 예술성	- 신규
15	성 동 구	1	더하기학교	구립	자기개발, 진로직업	-
16	성 북 구	1	청소년희망학교	민간(자가)	일본어, 체험학습	-
17	송 파 구	2	세움학교 잠실솔이학교	민간 시립	예술특화 노작활동	- -
18	중 구	1	동그라미학교	시립	제과제빵	-
19	중 랑 구	4	고드림학교 링컨학교 성모마음행복학교 튀움터학교	시립 법인(자가) 민간 시립	인성, 진로 영어특화 예술치유 자립, 공존	프로그램비 1천만원 프로그램비 1천만원 (병원회계로 지원) 프로그램비 1천만원
20	금 천 구	1	금빛나래학교	법인(자가)	체육특화, 문화예술	신규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의견17-0155, 2017. 6. 5., 경상북도 경산시]

**[질의요지]**

가.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경산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산시의 일반재산을 우선 임대하거나 경산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경산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경산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산시의 일반재산을 우선 임대하거나 경산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산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이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호에서는 “대안교육”이란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체험·인성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

호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가)와 경산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산시의 일반재산을 우선 임대하거나 경산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경산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경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상담지원), 제9조(교육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자립지원)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학교밖청소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책무 규정만으로는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

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경산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경산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경산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학교밖청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산시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경산시 일반재산의 대부와 관련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우선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에 우선권을 주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입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은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고, 대안교육



기관은 같은 항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하도록 경산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산시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경산시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위반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위 감면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사용료 감경 대상을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29. 의견 제시 16-0024 참조).

따라서,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산시의 일반재산을 우선 임대하거나 경산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경산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의견19-0345, 2019. 11. 19., 강원도 원주시]

**[질의요지]**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원주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원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원주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증시된 교육을 말하고(제1호),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하며(제2호),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제3호),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원주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장은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필요한 비용(제1호)이나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원주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제2호)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제5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주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개념, 운영·관리, 지원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없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 등을 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으로는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등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원주시조례안에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원주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주시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원주시조례안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 그 규정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는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 ? (생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

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0.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7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